



[www.jp.go.kr](http://www.jp.go.kr)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610호 2020년 10월 8일(금)

고 시
-----

- 증평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-- 2
-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----- 4

공 고
-----

-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----- 7
-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 12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----- 1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증평군 고시 제2020-107호

증평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

증평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08일

증 평 군 수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

가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구분	종류	노선번호	노선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기점	종점	주요 통과지	총연장(km)
군도 (변경)	군도	1호선	종암~분방	증평군 증평읍 울리~남차리	145,177	증평군 증평읍 울리 산69-13	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산4-3	-	6.9
	군도	3호선	장동~정용	증평군 증평읍 사곡리~도안면 도당리	59,714	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1020-3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121-5	-	3.8
	군도	4호선	화성~방축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	31,829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789-2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296-4	-	1.5
	군도	5호선	남차~문암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~광덕리	58,854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507-3	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24-1	-	0.4
	군도	9호선	남차~내성	증평군 증평읍 남차리~죽리	30,140	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83	증평군 증평읍 죽리 668-2	-	1.8
농어촌 도로 (변경)	리도	증평 203	남하~내룡	증평군 증평읍 남하리~용강리	490	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02-1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203	-	2.6
	리도	증평 205	용강~덕상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	1,747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25-7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61-1	-	0.4
	리도	증평 209	미암~화성	증평군 증평읍 미암리	1,876	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37-2	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3-2	-	0.6
	리도	증평 212	용강~금신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	1,653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42-4	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산34-1	-	0.1
	리도	도안 201	석곡~송정	증평군 도안면 송정리	2,643	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665-1	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767-2	-	0.5
	리도	도안 202	화성~송정	증평군 도안면 화성리	422	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0-5	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867-3	-	1.7
	리도	도안 203	도당~정용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	642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791-7	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160-3	-	1.9
	리도	도안 204	화성~노암	증평군 도안면 화성리~노암리	86	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02-3	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94-2	-	1.7

※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 사항 포함

나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

: 사업 완료된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모

2. 사업명 : 해당없음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: 해당없음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“생략”(열람장소에 비치)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2020. 10. 08. ~ 2020. 10. 30.

나. 열람장소 : 증평군청 건설과 (☎ 043-835-3822)

6. 지형도면 : “생략”(열람장소에 비치)

○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하며,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 가능(실음생략).

**증평군 고시 제2020 - 108호**

증평군 고시 제2020-50호(2020.05.15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08일

**증 평 군 수**

**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**

1. 건 명 :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
2. 사업위치 :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사업
  - 명 칭 :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
4. 사업의 규모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결정 시행	1	노외 주차장	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	1,260.8	증평군고시 제2020-50호 (‘20.05.15.)	자주식주차장 (1층 2단)

5. 사업시행자
  - 주 소 :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
  - 성 명 : 증평군수 홍성열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 - 실시계획인가일 ~ 2021. 12. 31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따로 붙임
8. 기타사항 : 관계서류는 증평군 도시교통과(☎043-835-3942)에 비치하고 있으며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○ 사업명 :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

○ 토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 (시,군, 읍,면, 동,리)	지번 분할후	지 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내용	
합 계 : 3필지				1,260.8	1,260.8						
1	증평읍 교동리	108	주차장	854.1	854.1	증평읍 광장로88	증평군				
2	"	110	대	133.6	133.6	증평읍 장뜰로 ***-	변*레				
3	"	111	대	273.1	273.1	증평읍 광장로88	증평군				

○ 물건조서

일련 번호	구분							토지 소유자		물건 소유자		비고
	군	읍	리	지번	지장물명	구조 및 규격	수량	주소	성명	주소	성명	
1	증평	증평	교동	110	근린생활 시설	철근콘크리트	246.38㎡	증평읍 장뜰로 ***-	변*레	증평읍 장뜰로 ***-	변*레	윤*용(세입자) 이*순(세입자) 정*순(세입자)

**증평군 공고 제2020 - 741호**

「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증 평 군 수

**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제정이유**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)
- 나. 위원장의 직무(안 제3조)
- 다. 심의회의 운영(안 제4조)

**3. 의견제출**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 서식)를 증평군수(기획감사관실,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기재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다. 제출기간: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

#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기획감사관실(전화: 835-3113, 팩스 : 835-31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증평군 조례 제 호

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, 이장 및 증평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한다.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간사)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증평군 공고 제2020-742호**

「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  
증 평 군 수

**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제안이유**

-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중 정식명칭이 아닌 “주사”라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「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간사에 관한 사항 중 용어 정비(안 제19조)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 [참조 : 생활지원과,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과 (전화 : 043-835-3514, 팩스 : 043-835-35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기재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다. 제출기간 : 2020. 10. 28.(수)까지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증평군 조례 제 호

###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당연직”을 “위촉직”으로, “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담당주사로 한다”를 “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17조(위원의 임기) ① <u>당연직</u> 위원 <u>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위촉직</u> 위원 <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촉직</u> ----- 2년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9조(간사)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	<p>제19조(간사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u>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.</u></p>

증평군 공고 제2020-750호

##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

증평군은 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(한국감정원 청주시사)에 제공하였기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의거 아래와 같이 제공사실을 공고합니다.

- 법 적 근 거
  -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【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】
  -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【표준주택가격의 조사·산정 및 공시 등】
- 제 공 일 자 : 2020. 10. 7.(수)
- 제공받은 자 : 한국감정원 청주시사
- 제 공 목 적 : 2021년 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
- 제 공 대 상 :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내 재산세대장(토지건물대장관리) 출력물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 성명, 주택소재지, 건물특성, 토지특성 등
-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: 2021년 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완료시까지
- 공고기간 : 2020. 10. 8. ~ 10. 23.
- 공고방법 : 증평군 홈페이지, 군보 및 게시판

2020년 10월 8일

증평군수